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2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23,290,000	39,698,700
일반회계	1,101,400,000	33,042,000
특별회계	221,890,000	6,656,700
공기업특별회계	151,350,000	4,540,500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94,790,000	2,843,700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56,560,000	1,696,800
기타특별회계	70,540,000	2,116,200
주택사업특별회계	721,000	21,63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1,030,000	330,9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678,000	50,3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40,000	205,200
치수사업특별회계	1,330,000	39,9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00,000	51,000
청소사업특별회계	43,550,000	1,306,5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220,000	36,600
수질개선특별회계	312,000	9,3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159,000	64,7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액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25,96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003,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직무수행경비
3. 배상금, 국선변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재해대책비 및 복구경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경비